

##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4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4. 9. 9  
제안자 : 정쌍식의원외5인

### 1. 제안이유

2006. 6. 30까지 한시적으로 시범운영 실시하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직제 신설에 따른 소관업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으로 배정하므로써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의정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가.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으로 배정(안 제3조 제2항 제3호 “나목”신설)

### 3. 관계법령

- 가.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
- 나.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
- 다.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조 및 제6조의2

## 부산광역시시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시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2항 제3호중 “나목”을 “다목”으로, “다목”을 “라목”으로 하고, “나목”을 신설한다.

### 3. 사회도시위원회

#### 나.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(생략)</p> <p>가. (생략)</p> <p>(신설)</p> <p>나. <u>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>다. <u>각 동사무소 업무중 위의 국·과 소관에</u> <u>관련된 사항</u></p>	<p>제3조(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<u>사회복지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>다. <u>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>라. <u>각 동사무소 업무중 위의 국·과 소관에</u> <u>관련된 사항</u></p>